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입장권등 판매자의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 >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04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입장권등 판매자의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9. 9.
3. 회 부 일: 2024.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동경기를 관람하려는 일반 국민의 큰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운동경기 입장권등을 대량으로 매매하여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수법인 ‘암표 거래’의 방법이 나날로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임. 암표를 방지하기위해 일부 공연기획사 등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암표 업체들이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편법을 쓰며 감시망을 벗어나 암표 시장을 확장하고 있음.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방법의 티켓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나아가 불법 행위로 탈취된 개인정보가 중고거래 사기 등 2차 범죄에도 활용되면서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입장권등의 판매단계에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압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최근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지문인식, 안면 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여부를 인증하고 있는 바, 공연 입장권 구매 등에도 이같은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도입하여 압표 목적의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는 자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입장권등 판매자의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는 자에게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등).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② (생략)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 ----- -----

<u><신 설></u> 1. · 2. (생 략) ② ~ ⑤ (생 략)	1.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경범죄 처벌법」¹⁾에 따르면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생한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4. 3. 26.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현행법(법률 제20413호, 2024. 9. 27. 시행)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²⁾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근거 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법 제3조제2항제4호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16만원

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그런데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부정판매 유형이 다양해지고, 티켓 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이를 악용한 2차 범죄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보다 안전한 판매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입장권등 판매자 또는 판매수탁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지문인식·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 거래 환경 구축, 부정판매 게시글 모니터링 및 삭제 등 판매자 등에게 각종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첫 판매단계에서부터 부정판매 예비 행위를 차단하여 정당한 입장권등 거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임³⁾.

3)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	금지행위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방송통신망법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u>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u> 2.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u>기술적 보호조치</u>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u>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u>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 수립 등 <u>관리적 보호조치</u> 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u>기술적 보호조치</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⑤ <u>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u>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표] 부정판매 방지 관련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 예시

유형	예 시
기술적 조치	- 티켓 예매 시 본인 인증 절차 강화 - 본인인증 기반 모바일 티켓 기술 개발(양도·거래 불가) (예) 스마트폰 고유 식별번호에 따라 1인 1티켓 발권 등 - 생체인증 시스템 활용한 티켓 입장 기술 활용 (예1) 인천공항 - 스마트패스(안면·지문인식)를 통해 출국장·탑승구 통과 (예2) 김포/김해/제주공항 - 바이오패스(손바닥 정맥)를 통해 탑승 수속 - 비정상적 접근 확인시 IP 차단, 아이디 정지 등
물리적 조치	- 신분증 대조 절차 추가 및 강화 (예) 현장발권 혹은 입장시 신분증-티켓 확인
관리적 조치	○ 경기 주최자 - 주최자(경기주최단체) 자체 규정 강화 (예) 암표 판매시 입장 금지, 회원 박탈 등 ○ 티켓 유통업자(티켓 위탁 판매자) - 매크로 이용, 대리구매 의심 정황 발견 시 수사 기관 의뢰 - 예매처 회원 이용 약관 개정 - 부정판매 게시물 모니터링 및 즉시 삭제 ○ 2차 판매 플랫폼 제공자 -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에 암표 티켓 거래글 발견 시 처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발송, 글삭제, 아이디 삭제 등 조치 - 암표 티켓 검색 제한 조치 - 상습 암표 판매 게시자 수사기관 의뢰 - 회원 이용 약관 개정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다양한 세부적인 조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정 영역의 조치로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문구(‘기술적·물리적 조치 등’)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표] 부정판매 금지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구분	이춘석 의원 (2942)	강유정 의원 (3804)	조계원 의원 (4600)	박수영 의원 (4673)	민형배 의원 (4785)								
금지 행위	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제6조의2제2항)	-	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제6조의2제2항)										
	-		-	기준가격 변경 (‘구입한 가격’ →‘판매 정가’) (제6조의2제1항)	-								
처벌	이득액에 따른 처벌 차등 (제49조제1호, 제49조의2제1호, 제55조제2항제1호)	-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제1호)		-								
	<table><tr><th>부당 이득액</th><th>처벌</th></tr><tr><td>500 만원 이하</td><td>500만원 이하 과태료</td></tr><tr><td>500~ 1,000 만원 미만</td><td>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td></tr><tr><td>1,000 만원 이상</td><td>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td></tr></table>		부당 이득액	처벌		500 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 1,000 만원 미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000 만원 이상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이득액 몰수·추징(신설) (제51조제4항)	
	부당 이득액		처벌										
	500 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 1,000 만원 미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000 만원 이상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기타	-	입장권 판매자의 부정판매 방지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 의무화 (제6조의2제3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5조제1항제1호)	-	‘신고기관’ 지정 (제6조의3)	부정판매 확인 방법·절차 등 ‘부령’ 위임 (제6조의2제3항)								

[표] 부정판매 금지 관련 「공연법」 개정안 발의 현황

이춘석 의원안 (2928)	강유정 의원안 (3799)	조계원 의원안 (4576)	박수영 의원안 (4674)
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	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이득액에 따른 처벌 차등	-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이득액 몰수·추징(신설)	
-	입장권 판매자의 부정판매 방지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 의무화,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기준가격 변경 (‘구입한 가격’ →‘판매 정가’),
			‘신고기관’ 지정

[표] 부정판매 금지 관련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현황

조계원 의원안 (4615)
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온오프라인)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 1]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운영 현황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감시·조치 현황]

(단위: 건, %)

연도	감시 건수			조치 건수			조치율 (B/A)
	신고접수	모니터링	계(A)	예매취소	경고문 발송	합계(B)	
'20년	1,607	4,630	6,237	366	129	495	7.9
'21년	1,423	16,999	18,422	207	473	680	3.7
'22년	7,829	28,994	36,823	151	670	821	2.2
'23년	14,728	37,223	51,915	80	1,214	1,294	2.5
'24년(9월말)	6,798	54,032	60,830	12	1,622	1,634	2.7

* 신고접수: 암표신고 통합사이트에 접수된 신고 건수

** 모니터링: 신고센터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인지한 암표 의심 사례 건수

*** 예매취소: 실제 예매취소된 건수

**** 직권취소 시 개인 간 거래 규제에 따른 법적 분쟁의 소지, 이미 개인간 거래가 완료된 건의 경우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경기를 보지 못하는 피해 발생 등의 우려를 고려하여, 경고문 발송 시 자진취소 유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운영 방식]

구분	내용
운영인력	3명 (신고접수·모니터링 2명, 기획·홍보 1명)
운영시간	• (신고접수) 온라인 상시 접수 • (모니터링) 09:00-18:00, 연중 무휴, 2인 교대근무
신고대상 경기	프로단체 및 구단 주최·주관 경기 (K리그, KBO, KBL, WKBL, KOVO 정규리그, 포스트시즌, 올스타전 등)
신고대상 사이트	•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 중고나라, 티켓베이, 번개장터, 당근 등 • (소셜미디어 채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신고 플랫폼	공연 및 스포츠 암표신고 통합 사이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업무 절차]

업무절차	업무내용	관리주체	수행주체
① 신고접수&모니터링	- 온라인 신고센터 통해 신고건 접수 - 모니터링 요원이 중고나라 • 당근마켓 • 번개장터 • 티켓베이 • 트위터 등에서 거래되는 암표 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② 결과공유	- 일일 신고접수&모니터링 확인 - 좌석 확인 건에 한하여 티켓사에 정보 전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 티켓사) * 일 1회 15:30 보고 및 전달		
③ 좌석확인&고객정보조회	- 좌석 확인 티켓 고객예매 정보 조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 티켓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티켓사 (인터파크, 티켓링크)
④ 경고문 발송	- 암표 의심 티켓 판매자에 경고문 발송		
⑤ 결과 송부	- 경고문 발송, 확인 불가, 자진 취소 등 처리 결과 전달(티켓사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